

(붙임 2)

「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6조(특별지원부문) ① (생략) 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 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.)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 ③ ~ ⑦ (생략)</p>	<p>제6조(특별지원부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 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.)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 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	<p>- 특별지원부문 운용기한 연장 반영</p>
<p><신설></p>	<p>부칙 (2021. 8. 31.)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21년 11월 첫 영업일로 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</p>	<p>- 부칙 신설 - 시행일 명시 - 경과조치 마련</p>